

#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

○○○○협회

유의사항

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발급번호:

성명:

생년월일:

증명  
사진  
(3.5cm×4.5cm)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○협회장 인

▶기술등급

날자	분야	기술등급	확인

▶기술자격

종목 및 등급	합격일	등록번호

▶ 학력

졸업일	학교명	학과(전공)	학위

▶ 교육·훈련

기간	과정명	기관명	교육기관의 장 인

▶소속 회사 변경				
입사일 ~ 퇴사일	회사명	업종	신고번호	비고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. . . ~ . . .				

